

대전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단13836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640,891원 및 그 중 155,752,322원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2022. 2. 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2021. 4.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별지2 목록 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해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1. 4.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

1) 원고는 2019.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이 D은행에 부담하는 주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9. 6. 4.부터 2024. 6. 3.까지로 정하여 대출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즉시,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①항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③항과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상환하기로 하였고,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대출실행

피고 A은 D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9. 6. 6. D은행으로부터 <기운>일반자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 및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 및 피고 B은 2021. 4. 20. 피고 C(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3. 5. 27. 피고 B에게
대표이사 직을 넘겨주고 사임한 후 2014. 7. 8.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함)에게 피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중개인 없이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21.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5. 17. D은행으로부터 피고 A이 2021. 5. 11. 매출대금회수 부진으로 인하여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 1차 가처분결정

원고는 2021. 6. 14. 채무자를 피고 C,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2021카단50927)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바. 임의경매개시 및 감정평가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2021. 8. 3.

임의경매개시 결정(청주지방법원 F)이 내려졌다.

2) 경매법원의 의뢰에 따라 2021. 8. 20. 기준으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 결과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제시 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은 200,952,600원,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1,728,000원, 합계 202,680,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사. 대위변제

원고는 2021. 9. 30. D은행에 신용보증잔액 1억 5,300만 원, 이자 2,752,322원, 합계 155,752,32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791,400원, 대지급금 97,169원이 발생하였다.

아. 2차 가처분결정

원고는 2022. 4. 1. 채무자를 피고 C,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관),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배당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1073)을 받았다.

자. 배당표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2022. 5. 27. 피고 C에게 59,588,1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1~6호증, 갑 7호증의 1~3, 갑 8~10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156,640,891원(= 대위변제금 155,752,322원 + 미수위약금 791,400원 + 대지급금 97,16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5,752,3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2. 2. 5.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에는 원고의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전으로서 원고의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 시점은 피고 A이 D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한 2021. 5. 11.로부터 불과 3주 전이며, 실제로 2021. 5. 17. 채권자인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아 원고의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전구상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 의사

이 법원의 진천군청, 음성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하여 과세연도 2021~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기타) 과세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 A의 진천군 관내 체납액이 56,930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매매가 중개인 없이

피고 A 및 그 현 대표자와 전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채무자인 피고 A 및 피고 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A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A 및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전 대표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C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배당금지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A에 별지2 목록 1항 기재 채권(59,080,085원 = 전체 배당금 59,588,117원 ×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200,952,600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202,680,600원, 원 미만 올림)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A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2항 기재 채권(508,032원 = 전체 배당금 59,588,117원 ×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1,728,000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202,680,600원, 원 미만 버림)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